2008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 일시: **2008**년 **10**월 **1**일(수) 오전 **10**시
- 장소: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 공동주최: 가족관계등록법대응연대모임

共感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국회의원 이정희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연합 Korea Women's Hot Line

■ 공청회 진행 순서 ■

▯ 사회 국회의원 이정희

■ **발제** 10:00~10:30	
	소라미 변호사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토론** 10:30~11:20	
	김상용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창우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무관**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질의응답** 11:30~12:00	

▬ 글 싣는 순서 ▬

■ 발제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소라미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5

■ 토론문

2. [토론 1] 김 상 용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5
3. [토론 2] 이 창 우 / 대법원 법원행정처 ·····29
4. [토론 3] 최 은 아 /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31
5. [토론 4] 유 경 희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37

■ 별첨자료

6. [별첨자료 1]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안 ·····41
7. [별첨자료 2] 홍정욱 의원 대표발의안 ·····47
8. [별첨자료 3] 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안 ·····51

■ 참고자료

9. 여성부 공공기관 입사시 제출요구 증명서 실태조사 결과 ·····55

[발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소라미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1. 개정 배경 및 진행 경과

헌법재판소는 2005. 2.3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호주승계 순위,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이고(중략)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 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 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1]는 이유로 호주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4. 정부, 이경숙의원 등 156인, 노회찬 의원 등 10인이 각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05. 2. 28.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하였다. 2005. 3. 2.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출한 대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5. 3. 31. 공포되었다. 그러나 호주제와 관련된 개정입법조항은 2008. 1. 1.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2]

호주제 폐지 논의가 한창이던 2003년 당시 호주제 폐지 운동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 호주제 폐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부가 아닌 일인일적부를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이 모아지면서 일인일적부를 관철시키기 위한 연대기구로서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을 위한 공동연대’가 구성되었다. 단체들은 목적별 신분등록제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운동을 위해 2004년 5월 ‘목적별 신분등록제 실현을 위한 공동연대’를 새로이 구성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2004년 6월 5일 공동연대가 주최한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워크샵”을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 반대, 가족형태별 차별에 대한 반대, 프라이버시권 보장”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마련을 위한 원칙으로 제시하였다.[3] 2005. 3. 2.

1)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 민법제781조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2008), 2008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p.480.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목적별 신분등록제 실현을 위한 공동연대’는 ‘목적별 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으로 전환하여 그 동안 제안해왔던 목적별 신분등록제를 호적법의 대체법안으로 입법화하기 위하여 보다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공동행동이 구상한 신분등록제도 구상은 2005. 9. 28. 노희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에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 외에도 2005. 12. 28. 이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과 2006. 3. 3. 정부가 제출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함께 발의되어 통합 심리 되었다. 결국 2007년 4월 이경숙 의원안과 법무부안을 적절히 통합 변형한 현행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함)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공동행동과 노회찬 의원안의 주요주장은 반영되지 못했으나 기존 가족부 중심의 신분등록제가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전환되고 또한 발급되는 증명서의 종류를 5가지로 분류하는 목적별 증명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일정 정도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은 공동행동의 활동 성과라 할 것이다.

2008. 1. 1. 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현재,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애초 예견되었던 바대로 증명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과다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침해의 문제를 낳고 있다.

◯ 어려운 취업 관문을 뚫고 입사를 했다. 회사에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친권자변경기록이 기재되어 있어 부모님 이혼 사실이 회사에 알려져 인사 상 불이익은 없을지 우려된다.

◯ 법원의 결정으로 전 남편 아이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아이의 ‘기본증명서’에 성 본 변경 사실이 공개되어 있어 학교생활에서 왕따를 당하진 않을지 걱정된다.

◯ 얼마 전 재판을 통해 어렵게 성전환을 했다. 그런데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성전환 사실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차별 받지 않을지 두렵다.

◯ 부양수당을 신청하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모(母) 표기 란에 만난 적도 없는 생모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친자식처럼 키워주신 현재 어머니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무런 관계로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 나에게 가족은 누구인가?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결혼 전 출산해 입양시킨 자녀가 기재되어 있다. 힘들었지만 아이와 나를 위해 힘겹게 입양결정을 했던 것인데 기록으로 남아있다니...

◯ 회사에서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혼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인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된다.

위 사례들이 바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아래에서 발생하고 있거나 예견되는 문제들이다. 이와 같은 문제 지적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 등 재산관계 공시를 위하여 어쩔 수 없다, 이혼 전력이나 성별 전

3) 김원정(2008), 올바른 신분등록제도 설계의 원칙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선과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주최 ‘가족관계등록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p.74

환 등의 사실을 숨기는 것을 국가가 도울 수는 없다'는 식으로 대응함으로써 정보인권에 대한 미천한 인식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신분과 가족관계에 따른 편견이 강한 우리사회에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채 법제도로서 개인의 정보가 전부 노출되도록 규율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제도적 폭력이라 할 것이다.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권리침해 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2008. 3. 25.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주최로 가족관계등록법 권리침해 실태발표 및 대안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 "가족관계등록법, 무엇이 문제인가"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른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되었고 여론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8. 4. 9.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운동사랑방,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등록법 대응 연대회의(가칭)' 가 결성되었다. 2008. 5. 29.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결합하여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2008. 7. 24.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실의 결합으로 법개정 작업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었다. 또한 연대회의 구성 단위 별로 가적관계등록제도로 인한 권리 침해사례를 접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활동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현재 국회에는 두 개의 가족관계등록법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2008. 7. 14. 홍정욱 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는 사항 중 '양부모'를 삭제하고, 친양자입양관계가 있는 경우와 같이 입양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양부모'를 '부모'로 표시하도록 하여 입양관계는 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008. 9. 3. 주광덕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홍정욱 안의 양부모 표기의 문제를 포함하며 나아가 개정안 제15조 제2항에 "제1항 각 호의 증명서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변동된 신분관계가 전부 노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주광덕 의원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내용으로 일부사항을 증명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별첨자료 참고)

2. 개정안 주요 내용

(1) 개인정보보호 의무 조항 및 벌칙 조항 신설

현행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는 개인의 신분사항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국가가 수집 관리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전 호적법에 의한 호주제 시스템과 별반 다르지 않다. 기왕에 국가에게 부여되었던 개인정보

수집 관리 권한과, 그로서 담보되는 국민 관리 통제의 효율성을 국가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국가는 개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데 있어서 헌법 제 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은 천명되어 있으나[4], 민간영역(사기업, 사립학교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포괄적 법률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입사 입학시 관장 기관에서 과도한 신분증명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은 매우 높으며 현실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영역 민간영역을 포괄한 모든 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 요구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법에 명시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도출된다. 따라서 개정안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제 1항에서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명시하고 2항에서는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민간기관 사인에 대하여 증명서 제출 요구시 그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최소 필요한 증명서를 수집할 것을 명시하였다. 개정안 제117조 제1호를 신설하여 본 개정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벌칙조항인 제117조[5]와 제118조[6]를 비교해보았을 때 규제하고자 하는 행위가 117조의 구성요건과 보다 유사하므로 제117조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 및 정부는 개인정보의 제출 요구를 최소화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교부 요구 증명서에 대한 적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고, 그 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5) **제11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6항(:등록부등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부등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록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한 사람
2. 제13조제2항(:제13조 1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한 사람
3.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또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4. 이 법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의 권한에 관한 승인절차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알아낸 사람

6) **제118조** (벌칙) ①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 및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증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외국인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 신·구 조문 비교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5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 대법원 및 그 위임을 받아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나 사생활의 비밀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또는 사인이 이 법에 따라 교부되는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족관계 등록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증명서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	개정
제11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6항을 위반한 사람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3.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또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4. 이 법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의 권한에 관한 승인절차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알아낸 사람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신설)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목적 범위외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람, 목적 외 용도로 교부받은 증명서를 사용하는 사람 2. 현행 1호 3. 현행 2호 4. 현행 3호 5. 현행 4호

(2) 등록기준지 및 본 삭제

호적법 상 본적 개념은 실제 개인의 거주지나 가구 구성과 일치하지 않는 무의미한 기준지로서 호주제와 함께 혈연 지연을 따지는 우리사회의 낡은 관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다. 호주제의 본적 개념을 그대로 계승한 가족관계등록부 상 '등록기준지'는 호주제와 본적제도의 폐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서 삭제되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가족관계등록제 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관리를 위한 기준지로서 등록기준지 개념은 주소지로 얼마든지 대체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등록기준지'라는 별도 개념은 필요치 않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법은 이미 동성동본금혼제도가 폐지되어 '본'의 기재가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성'이외에 '본'을 기재하여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 부모의 '본'까지 기재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과다공시하는 문제점이 있다. 남계 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는데 필요한 법적 장치인 호주제가 폐지되고 동성동본 금혼제도 역시 폐지된 상황에서 '본'은 더 이상 어떠한 법률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본' 개념은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 신·구 조문 비교표

현행	개정안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가족관계등록부(이하"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가족관계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9조 ① 현행과 같음
②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2. 성명 본 성별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1. 등록기준지(삭제) 1. 성명 본(삭제) 성별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현행 3호 3. 현행 4호

제10조 (등록기준지의 결정) ①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시행일 2008.1.1]]	제10조 (등록기준지의 결정) 삭제
	*그 밖에 등록기준지 및 본이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서 등록기준지 및 본 삭제

(3)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최소화

신분등록제도의 정보의 과다 공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는 목적별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양된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가 '양부, 양모'로 표시되고 별도로 친부모가 표시되어 누구라도 입양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는 입양증명서를 별도로 두어 입양사실을 입양증명서를 통해서만 공시되도록 하는 본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기본증명서에는 친권자 변경기록이 표시되어 본인의 부모가 이혼한 사실이 노출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이혼 입양 파양 등 신분변동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동사항이 모두 증명서에 표시됨으로써 과다한 개인정보가 공시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 법 제15조의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을 개정하여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부모로 표시하도록 하고, 교부 청구를 하는 사람이 부모, 배우자, 자녀 중에서 증명서에 기록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개인 정보의 노출을 제한하고자 한다. 또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민감한 정보에 대하여는 교부 청구를 하는 사람이 기록하지 아니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하되, 본인 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등록부의 일부 증명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공시기능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발급 증명서의 내용이 전부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부 증명의 공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부 증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신·구 조문 비교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
1. 가족관계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가. (현행과 같음)
나.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 ———————————————주민등록번호(이 경우 입양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를 부모로 기재한다)
2. 기본증명서	2.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가. 본인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이 경우 성명 및 성별에 관한 사항은 증명서 발급당시 사항에 한한다.)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에 관한 사항(이 경우 국적에 관한 사항은 증명서 발급당시 국적에 한한다)
<신 설>	다. 본인의 성명 및 성별 변경, 국적상실 취득 및 회복, 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현행과같음)
가. 본인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4. 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가. (현행과 같음)
나.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 성별 ·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 양부모 ——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다. (현행과 같음)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 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 ·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현행과 같음)
②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족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부모 배우자 자녀 중 지정한 사람만을 증명서에 기록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③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각 호의 다목을 기록하지 아니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청구를 받은 시 읍 면의 장은 그 청구에 따라 증명서를 교부하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없더라도 제1항제2호부터 제5호의 각 다목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각호에 따른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이 변동사항 등을 포함한 전부 증명임을 표시할 수 있다.
<신 설>	⑥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 신청권자의 엄격 제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1.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2.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법 제14조 제2항) 친양자 입양의 경우 입양가정의 사생활보호가 특별히 강하게 요청되므로 다른 종류의 증명서보다 발급을 더욱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이다. 이때 제2호의 '혼인당사사자'란, 혼인 성립 이전 관계에 있는 자로서 증명서 발급 신청 당시에는 증명대상자와 어떠한 친족관계도 아니다. 또한 혼인당사자인지 여부를 가려낼 기준이 불명확하며, 이후 혼인이 성사될지 여부 또한 가변적이다. 이와 같이 혼인당사자의 특정 어려움과 이후 관계의 가변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혼인당사자에게까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 신청을 확대하는 것은 본래 현행법 제14조 제2항의 제정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신청권자에서 혼인당사자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다른 증명서와 달리 더욱 제한적으로 발급신청권자를 규정하고자 한 입법 목적에 부합할 것이다.

● 신·구 조문 비교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 비송 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

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②제15조제1항제5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

(5) 기타

1) 계부모자녀관계의 가족관계 보호: 민법 상 친양자요건의 완화

현재 단체를 통해 접수되는 피해 사례 중 계부모자녀 관계가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어떠한 관계로도 공시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재혼가정의 경우 계부모자녀 사이에 친부모자녀와 같은 유대관계 및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하더라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란에 친부모가 기재되므로, 계부모는 직접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하여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 배우자의 자녀와 가족으로 표시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혼한 여성의 자녀가 성을 계부의 성으로 변경한다고 하여도 실재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계부와 아무런 가족관계가 없는 것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여전히 재혼가정의 자녀라는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으며, 실재로 가족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재혼 가정의 구성원을 가족관계로 증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위와같은 문제점은 현행 민법 상 계부모자녀가 혈족관계로 인정되지 않는 점, 친부모자녀 사이의 상속권 등과 같은 재산관계를 공시해야할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해결 방안으로서 친양자입양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친양자제도의 요건 및 절차[7]를 완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즉 계부모자녀 사이에 친부모와 같은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생부모와 연락이 단절되어 있는 등 전반적인 가족 환경 등을 참작하여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이상인 경우 및 생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친양자입양이 가능하도록 민법 개정이 수반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당사자의 동일성 파악할 수 있도록 외국인 배우자 기재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이름이 출입국관리 기록 및 여권 외국인등록증 상에는 영문으로 표기되는 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대법원예규에 따라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기재된다. 이와 같은 기재 방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외국인 배우자는 이름만 가지고는 당사자의

---

7) 민법 제908조의 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②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동일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가족관계, 혼인관계를 증명해야 할 경우(예: 은행거래, 보험금 수령 등)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추가로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해야만 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외국인은 한국인 자녀의 부모로서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법률행위를 행함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는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한국생활에 많은 장애가 뒤따른다. 이에 더해 당사자의 동일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운영되는 외국인 관리 및 신분 등록 시스템은 외국인의 권리행사를 더욱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자신의 법적 지위에 부합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 기록 및 여권, 외국인등록상의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 기재가 일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호(외국인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및 161호(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를 영문 병기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개정한다면 외국인 배우자들의 신분증명이 용이해질 것이며 그에 따라 외국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보장될 것이다.

현행	개정
예규 38호 제3조 3항) 외국인의 인명은 신고인이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한글로 표기한 행당 외국의 원지음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한자는 함께 기록할 수 없다.	예규 38호 제3조 제3항) 외국인의 인명은 (현행과 동일) 원지음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하며, 이 경우 영문을 함께 기록한다.
예규 161호 나. 혼인신고의 절차 및 기록방법: 외국인과의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인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하였다가 ~	예규 161호 나. 혼인신고의 절차 및 기록방법: (현행과 동일) '혼인사유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였다가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주민등록 등본의 경우 2008. 8. 19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7호 제9호의 서식을 변경하였다. 즉 주민등록 등본 발급시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과다하게 노출되고, 민원인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모든 주민등록사항이 표시 발급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되는 문제점이 존재했었는데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신청시 교부대상자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시되지 않도록 신청 선택제를 도입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주민등록사항만 표시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개인정보를 보다 민감하게 취급하는 조치로서 환영할만한 것이며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증명서 발급 행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도입이 촉구된다.

또한 같은 입법예고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제3자에게 주민등록 등 초본 교부할 경우 본인의 사전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하였다. 주민등록 등본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신분정보가 집대성되어있는 가족관계등록법 상의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통보조치가 도입된다면 자신도 모르는 새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3. 나가며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제정□시행되기까지 남녀차별적인 호주제 폐지를 위한 여성운동의 헌신과 노력,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도입을 위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결성한 목적별공동행동의 지난한 법제정 운동이 존재했다. 그러한 염원과 운동의 성과로 탄생한 가족관계등록법은 일면 남녀평등 위배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크게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근본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이토록 광범위하게 수집 관리하여야할 필요성과 정당성이 존재하는가하는 물음은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법명에서부터 드러내고 있듯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신분관계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조장□확산하고 있는 문제점 또한 현존한다. 그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새로이 도입된 가족관계등록제 하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실 가능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가족관계등록제도 하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침해가 핵심이다. 이혼 비혼모 재혼가정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은 변화하지 않은 채 노출을 원치 않는 개인에게 떳떳하지 못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제도적 폭력이며 인권 침해의 문제이다. 많은 문제 지적 및 피해사례는 당장 약간의 법제도 개선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다. 국회 및 정부는 새로운 가족관계증명서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랬을 때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개인정보가 과다하게 노출되는 문제를 막고자 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현행_ 별지 제1호서식]

가 족 관 계 증 명 서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1234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김본인(金本人)	1965년 01월 01일	650101-1234567	남	金海

가족사항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부	김일남(金一男)	1941년 02월 01일	410201-1555555	남	金海
모	이일녀(李一女)	1938년 03월 01일	380301-2333333	여	全州
양부	김양부(金養父)	1940년 04월 01일	400401-1333333	남	金海
양모	이양모(李養母)	1942년 04월 02일	420402-2222222	여	全州
배우자	박여인(朴女人)	1968년 02월 02일	680202-2345678	여	密陽
자녀	정이군(鄭二君)	1973년 11월 20일	731120-1234566	남	全州
자녀	김일순(金一順)	1990년 01월 01일	900101-2777777	여	金海
자녀	김순희(金順喜) 사망	1995년 11월 11일	951111-2888888	여	金海
자녀	김상준(金上樽)	1999년 05월 08일	990508-1325626	남	金海

위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읍 면)장 ○ ○ ○ 직 인

[현행_ 별지 제2호서식]

혼 인 관 계 증 명 서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1234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김본인(金本人)	1965년 01월 01일	650101-1234567	남	金海

혼인사항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배우자	박여인(朴女人)	1968년 02월 02일	680202-2345678	여	密陽

구분	상 세 내 용
혼인	[신고일] 1986년 01월 01일 [배우자] 전여인
이혼	[협의이혼신고일] 1987년 04월 04일 [배우자] 전여인
혼인	[신고일] 2008년 02월 01일 [배우자] 박여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680202-2345678 [처리관서] 서울특별시 중구

위 혼인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읍 면)장 ○ ○ ○ 직인

[현행_ 별지 제3호서식]

입 양 관 계 증 명 서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1234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김본인(金本人)	1965년 01월 01일	650101-1234567	남	金海

입양사항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양부	김양부(金養父)	1940년 04월 01일	400401-1333333	남	金海
양모	이양모(李養母)	1942년 04월 02일	420402-2222222	여	全州
양자	정이군(鄭二君)	1973년 11월 20일	731120-1234566	남	全州
양자	김상준(金上樽)	1999년 05월 08일	990508-1325626	남	金海

구분	상 세 내 용
입양	[신고일] 1995년 01월 03일 [양자] 정이군
입양	[신고일] 1997년 03월 10일 [양부] 김양부 [양모] 이양모
입양	[신고일] 2008년 01월 03일 [양자] 김상준 [양자의 주민등록번호] 990508-1325626 [처리관서] 서울특별시 중구

위 입양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단, 친양자입양관계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만 표시합니다.

년 월 일

○○시(읍 면)장 ○ ○ ○ 직 인

[현행_ 별지 제4호서식]

친 양 자 입 양 관 계 증 명 서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1234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김본인(金本人)	1965년 01월 01일	650101-1234567	남	金海

친양자입양사항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친양자	김순희(金順喜) 사망	1995년 11월 11일	951111-2888888	여	金海

구분	상 세 내 용
입양	[친양자입양재판확정일] 2008년 03월 02일 [결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친양자] 정순희 [친양자의 주민등록번호] 951111-2888888 [신고일] 2008년 04월 03일 [신고인] 김본인 [처리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읍 면)장 ○ ○ ○ 직인

[현행_ 별지 제5호서식]

기 본 증 명 서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1234

구분	상 세 내 용
작성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일] 2008년 01월 01일 [작성사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변경	[변경일] 2008년 01월 03일 [전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00번지의 3 [처리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김본인(金本人)	1965년 01월 01일	650101-1234567	남	金海

일반등록사항

구분	상 세 내 용
출생	[출생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234번지 [신고일] 1968년 02월 15일 [신고인] 부
국적회복	[국적회복허가일] 1975년 01월 02일 [국적회복전국적] 미국 [신고일] 1975년 01월 03일 [신고인] 김일남 [송부일] 1975년 01월 03일 [송부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개명	[개명허가일] 1976년 02월 02일 [허가법원] 서울가정법원 [신고일] 1976년 02월 05일 [신고인] 김일남 [개명전이름] 철수 [개명후이름] 본인
정정	[직권정정서작성일] 2008년 03월 01일 [정정일] 2008년 03월 01일 [정정전 주민등록번호] 650101-1234578 [정정후 주민등록번호] 650101-1234567 [처리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위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읍 면)장 ○ ○ ○ 직인

토론 1

김 상 용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신분 상태(혼인여부 등)를 밝히고,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가족관계등록 제도를 마련한 목적과 취지를 생각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신분사항 및 친족관계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개인의 신분 및 친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는 것과 실제로 어떠한 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개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어느 범위에서 공시할 것인가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배우자 수당을 받기 위하여 현재의 부부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면, 그에 관한 정보만이 공시되어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개인에 관한 신분 및 친족에 관한 사항을 전부 공시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서를 통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항상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요구되는 사항의 증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도 필요한 신분관계의 증명이라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개인의 신분 및 친족관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이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 신분관계를 공시한다는 신분등록제도 본래의 취지는 전연 훼손되지 않는다. 위에서 본 예에서 배우자 수당을 신청하기 위하여 부부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의 혼인상태와 배우자만을 증명서에 공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경우에 과거의 혼인이나 이혼, 전배우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은 '증명을 위하여 필요한 신분관계의 공시'라는 가족관계등록제도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국가가 이와 같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개인의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 국가의 입장에서 보아도 이익이 될 것은 없다(불필요한 신분관계정보의 공시로 개인이 안정이 흔들리고 불행하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국가가 얻을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국민의 실제 생활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신분관계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국가는 그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다시 말하지만 이는 국가가 개인의 신분사항, 친족관계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것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2.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하면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개인의 현재 신분상태 뿐만 아니라 과거의 변동사항까지도 모두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거의 신분 변동사항까지 전부 공시하는 것(예컨대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과거의 혼인, 이혼 사항. 기본증명서의 경우 과거의 성□본의 변경, 성의 전환,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친권자 결정 등)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대부분의 경우 불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분관계증명서에 현재의 상태(발급 당시 유효한 사항)만을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독일신분등록법은 이 점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신분등록법 제56조 제2항),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과거의 변동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신분증명서의 종류를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취학이나 취직을 위하여 연령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면 현재의 상태만을 공시한 기본증명서만으로 충분하고, 과거의 신분변동사항을 증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또한 직장에서 배우자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증명서를 제출한다면 현재의 혼인상태를 공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과거의 이혼사실까지 함께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신분관계증명서를 현재 상태만을 표시하는 증명서와 과거의 변동사항까지 표시하는 증명서로 이원화한다고 할 때, 과거의 변동사항까지 표시하는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의 가족상태만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증명의 목적을 넘는 불필요한 정보를 공시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역시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문제가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로 친자관계(부모 자녀관계)를 증명하는 데 이용될 것이다. 부부관계는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으므로(혼인관계증명서가 현재의 혼인관계만을 표시한다는 전제에서), 굳이 배우자 이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친자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부 또는 모와 해당 자녀의 친자관계를 개별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모와 모든 자녀의 친자관계를 일괄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는 모 갑이 자녀 을의 보육수당을 신청하기 위하여 갑과 을 사이의 친자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면 갑과 을이 친자관계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 충분하며, 그 외의 가족관계까지 포함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와 같이 친자관계를 개별적으로 증명해 주는 친자관계증명서를 발급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대폭 감소할 것이다(상속관계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될 것이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개별적인 친자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 이상의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어차피 명칭에 맞는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으며, 임의로 본인을 중심으로 하여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표시하고 있을 뿐이다. 형제자매도 포함시키지 않은 증명서에 과연 '가족'관계증명서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타당한가도 의문이다. 이와 같은 명칭의 사용은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가족이 아닌가, 가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필요한 의구심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독일도 2007년 신분등록법개정을 통하여 가족부를 폐지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개인의 신분과 친족□상속과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는 데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는 데 있다(가족관계증명서가 없어도 어려움없이 상속관계를 증명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데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편리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 점을 인정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존속시키더라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정보가 공시되지 않도록 가족관계증명서가 사용되는 경우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하도록 하고, 부모와 특정 자녀와의 관계는 친자관계증명서를 통해서 증명하도록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대폭 줄어들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제로서, 발급 가능한 신분증명서의 종류를 늘리고 각 증명서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신분정보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이 증명해야 할 신분사항과 사생활 보호의 문제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증명서를 스스로 선택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4. 회사나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필요한 목적을 넘어서 개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가 담긴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관련서류가 필요하다면 신청인으로부터 현재의 배우자를 표시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며, 과거의 혼인□이혼사실이 포함된 증명서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해당 자녀의 친자관계를 표시한 친자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되며, 그 이상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회사,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신분관계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특정 증명서의 종류를 명시하여(예를 들어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당사자가 증명해야 할 사항의 범위와 사생활의 보호 문제를 고려하여 스스로 적당한 증명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예컨대 부부관계나 친자관계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친자관계증명서 중에서 본인이 적당한 것을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만일 회사나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개인이 증명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때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5. 현재 제출되어 있는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양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생부모를 기재하지 않고 양부모를 부모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민법상 일반입양(보통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에 의해서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지 않으므로(따라서 양자는 법률상 양부모와 친생부모, 4명의 부모를 가지게 된다), 입양 후에도 부모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친생부모를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 조화되기 어렵다. 또한 실제로 양자의 입장에 따라서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생부모가 표시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선,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만이 부모로서 기재되고 친생부모가 표시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가족의 경우에는 이미 양친자관계가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친생부모와 양자와의 관계는 사실상 존속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런 가족의 경우에는 친양자입양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친양자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입양전의 친족관계가 소멸하므로, 친생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도 종료한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만이 부모로 기재되며 친생부모는 표시되지 않는다), 실제로 친양자입양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친양자입양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민법상 친양자입양의 경우 친양자로 자녀가 만 15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장애가 되는 사례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친양자입양의 요건을 완화하여 이러한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제2호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에 “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추가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부모로서의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친양자입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여 친양자입양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친생부모의 동의거부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이 부모의 동의를 대체하는 심판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독일민법 제1748조 참조).

한 가지 더 참고로 언급한다면, 신분증명서에 의해서 개인의 신분에 관한 특정한 사항이 공시되는 것을 차단해야 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항에 관한 부분이 증명서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고, 양자와 친생부모 사이에는 사실상 친자관계가 소멸하여 당사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오로지 양부모만이 부모로서 표시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생부모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법원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이 공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기간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갱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독일신분등록법 제64조 참조).

토론 2

이 창 우 / 대법원 법원행정처

1. 안 제5조의 2에 관하여

- 입법취지는 찬성

2. 안 제9조제2항에 관하여

-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검색 및 등록관서 관할의 기준이 됨.
- 주민등록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며 새로 주민등록지를 도입할 이유가 없으며, 도입시 오히려 주민등록표와 전산상 연결이 가능해져 정보의 통합이 가속화됨.
- 등록기준지는 개인별로 자유롭게 변경신청 가능하므로 구 제도의 폐해와 무관하며, 개인정보보호에 오히려 유리함.
- 본 삭제는 민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로 헌법이 보호하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

3. 안 제15조제1항에 관하여

- 주광덕 국회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 참조요망
- 입양가정의 사생활보호방안 적극 검토 중.
- 일부증명은 현재에 현출할 필요가 없는 과거 신분행위의 이력 또는 정정내역을 현출하지 않는 증명으로 적극 검토 중이며, 일부증명에서 현출하지 않는 상세한 내역은 규칙, 예규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사항임.
- 전부증명은 본인 외에도 정당한 이해관계인 등에 의하여 발급의 필요성이 있음(법 제14조제1항 각 호 참조). 전부증명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규칙, 예규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사항임.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상속, 재판, 집행, 등기, 공탁의 사법절차에서 정당한 이해관계인에게 발급이 필요하며, 복지, 보훈, 연금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필요한데, 본인이 원하는 가족관계만을 가족관계증명서의 양식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함. 특히 전혼 중의 자를 삭제한 가족관계증명서의 사용용도가 의문임. 현재 또는 장래의 배우자에게 제시할 목적에 국가기관이 협력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

- 가족관계등록부는 공적장부로서 친족상속의 법률관계 등 신분관계를 기록하고 공시하는 기능을 하는 공정증서원본이므로 증명서의 공신력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생활 보호를 고려하여야 함.

4. 외국인 배우자의 신분증명을 위하여 외국인등록번호를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하는 방안 적극 검토중임. 현재는 성명과 출생연월일(2003. 10.부터), 국적을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하고 있음. 외국인 배우자의 신분증명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등록부에 영문 성명을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임. 비영어권 출신이 절대 다수인 외국인 배우자의 성명의 원지음을 표시하는데 영문자보다는 한글이 더 우수한데, 굳이 영문자를 도입할 필요는 없음.

5. 증명서 상에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은 지금도 시행 중임(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호 별지제11호서식 증명신청서 참조요망).

6. 제3자 증명서 발급시 통보제도 - 부동산등기제도에서 처음 도입 시행 중인 방안으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토론 3

최 은 아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 들어가며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을 대신해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 지 9개월이 지났다. 2008년 1월 1일부터 전 국민은 호적부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개인별로 자신의 출생, 혼인, 사망, 국적 등을 확인, 증명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2007년 4월 2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아래 가족관계등록법)' 제정까지 국가신분등록제는 한걸음 진전을 했으나 올해 내내 예정되어 있던 문제들이 속속 드러났다. 18대 국회에서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 영역을 기초로 개정안을 준비하는 일이 소중하게 다가온다. 각종 악법들이 18대 국회에서 심의중인데,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이 논의되는 것에 희망이 있음을 발견한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영역을 정리하고 바뀌어야할 지점에 관해 논의해 합의수준을 높이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소수자의 권리 증진에 기여하리라고 기대한다. 이 자리를 마련한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1.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 지 9개월이 지난 후 나타난 문제들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대략 2가지 범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어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개인은 기본증명서를 포함해 목적에 따른 증명서(가족관계, 혼인관계, 입양, 친양자입양)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신분관계를 비롯해 과거 이력까지를 보여주고 있어 이혼, 개명, 입양과 파양 등에서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증명서에서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

둘째, 가부장 제도가 남긴 유산이 가족관계등록법 곳곳에 남아있어 성 평등과 사회적 소수자 보호에

미흡하다. 가족관계등록법에 있는 '등록기준지와 본'은 성 평등에 기초한 접근에 어긋나는 부분이다. 과거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대체되는 것(부칙 12조1항)만 보아도 가부장의 유산이 면면이 명맥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등록기준지와 본'은 혈연 부계 친족 중심의 '가족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제도이며, 호주라는 망령은 사라졌으나 여전히 핏줄에 따른 가족관계 안에서 개인을 증명하는 방식이 살아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 여성이 겪는 인권침해-국적 취득 전까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분등명으로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것(거의 무국적자의 상태), 이주 여성의 이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는 혼란, 신분확인을 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추가로 제시하는 것,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남편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심각하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그림자가 된다.

2.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

1) 개인정보 보호와 자기결정권 행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권리를 개인에게 보장되도록 자기정보통제의 권리가 '프라이버시권'으로 이해되고 있다. 'OECD 개인정보 보호원칙'의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시 고지 또는 동의 △정보 내용 정확성의 원칙 △목적 명확화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안정성 확보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의 접근권 보장 △책임의 원칙이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일부개정안(아래 개정안)은 비교적 'OECD 개인정보 보호원칙'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고 판단하고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①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최소 필요한 증명서(신설조항)과 증명서 교부 신청권자 제한(개정)

과 과도한 증명서 제출 요구에 대한 규제 도입(개정)

개정안에 국가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에 공감하고 동의한다.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실제 국가행정 업무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공무원 개인에게 요청해야 하고 시스템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정안에서는 신설조항을 통해 1항에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명시하고 2항에서 공공기관, 민간기관, 사인에게 증명서 제출 요구시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최소 필요한 증명서를 수집하도록 했다. 그렇다면 '최소 범위의 증명서' 발급 기준과 내용이 법률로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증명서 교부 신청권자를 제한하고 과도한 증명서 제출 요구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렇듯 법률에 명시하지 않으면, 실제 운영하는 기관 및 개인의 '관행'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분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기구와 개인(주로 권력을 가진 그룹)의 입장에서는 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목적에 따른 필요최소범위의 정보가 수집, 공시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벌칙조항을 두는 것에 동의한다.

이런 내용을 규칙과 예규차원에서 기준을 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권운동을 하면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규칙이나 예규로 만들어 놓은 경우, 국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법률로 만들어놓아야 국회라는 공론의 장 속에서 그나마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인권을 다루는 내용을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

앞으로 18대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려는 움직임 있으므로 '목적'이나 '조항'에 가족관계 등록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진보네트워크를 비롯해 정보인권단체들은 대체입법을 고려하고 있다. 운동사회 안에서 서로 소통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안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9월 1일 입법 예고한 '정보통신법률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관점보다는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고 정보인권단체들은 평가하고 있다.

② 일부 증명과 전부 증명서의 구별 발급(개정)

각각 증명서를 발급할 때 과거 이력까지를 포함한 전부 증명과 현재 상황을 공시하는 일부 증명을 나누어서 발급하도록 것에 동의한다. 문제는 법으로 규정을 해도 현실에서 전부증명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것에 있다. 그렇다고 어느 때 전부증명을 요구하고 어느 때 일부증명을 요구할지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옳을지도 고민이 된다. 따라서 법으로 강제하는 것 외에 실천의 영역에서 관행을 고발, 지적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③ 증명서 발급 시 본인에게 통보하고, 본인 외 주민등록 번호 선택적 기재

제3자가 증명서를 발급할 때 본인에게 통보하고, 증명서에 본인 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선택적 기재 하는 것에 동의한다.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2) 평등과 사회적 소수자 보호

어떤 법률에 인권의 가치가 작동되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이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차별과 편견을 유포하는 법이 있다면, 폐지하고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존중의무에 해당한다.

어떤 권리가 성, 나이, 인종, 성적 지향, 가족 형태, 국적, 피부색, 종교, 정치적 견해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은 '세계인권선언'의 2조를 비롯해 국가인권위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또한 소수자 보호는 '욕구'에 기초해 그들의 정체성이 인권의 목록으로 재정리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① '등록기준지' '본' 삭제(개정)

'등록기준지'를 유지하고 '본'을 기록하는 것이 호주제와 본적제도의 폐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공감하고 때문에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고 성 평등에도 일치하지 않는다.

② 당사자의 동일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외국인 배우자 기재(개정)

외국인의 인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당사자의 동일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름을 영문으로 기재하는 것과 일반등록사항에 외국인등록번호를 넣는 것을 동의한다.

3) 개정안과 일치하는 법률 목적과 이름 변경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신분등록의 업무가 어떻게 '가족관계의 등록과 증명'으로 한정될 수 있는가? 여전히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 신분사항을 가족관계의 범위에서 관리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때문에 국가신분제도를 다루는 법은 가족관계의 등록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분사항을 공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으므로 법률의 명칭과 목적을 바꾸기를 제안한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공동행동은 구 노회찬 의원안으로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을 제안한 바 있다.

3. 마치며

호주, 호적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전체의 신분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여, 과도한 개인정보를 공시하고, 가족관계를 통해 개인의 신분을 판단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잘못된 관행을 부추겼다는 점이다. 호주를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호적제는 국가가 강제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이며, 국가는 호주라는 대표를 앞세워 개인을 통치해왔다.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50여년 만에 새로운 국가신분등록제도가 만들어졌고, 인권의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을 변화시켜야 하는 노력이 함께 갈 때 50년 동안 굳어진 국가행정과 사람들의 의식도 바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국민의 인권보호와 보장, 증진을 위해 국민의 신분(출생, 사망, 국적, 혼인 등)을 증명하는 새로운 국가신분등록제도가 개정되어야 하며 신분등록제도의 공시기능과 프라이버시가 상충되지 않고 또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신분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입법운동과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운동이 함께 전개될 필요가 있다.

토론 4

유 경 희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1. 개인별 신분증명제도 실현의 의미와 현실

1) 호주제 폐지는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존엄성, 성평등 가치의 존중, 다양한 가족에 대한 존중 및 수용 실현의 장을 여는 계기 마련.

2)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5.17 법률 8435호)의 시행

호적법의 대체법안.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을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

부성주의 원칙 수정, 성변경 허용, 친양자제도 도입 등 제도화.

가(家) 중심 편제 -> 1인 1적제로, 그러나 법명에서 볼 수 있듯 한계점 노출

법명 변경의 필요성

3) 개인 신분증명서의 필요성

가족관계를 통한 개인의 신분 증명이 아닌 독립적 개인 중심의 신분 증명이어야 함.

(가족주의, 혈연주의 벗어나지 못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성격상 친족·상속의 법률관계의 공시 기능을 가져야 한다. 이력, 변동 사항에 대한 별도의 증명서 발급 필요성에 대해 비효율적(행정적 편의)이며, 현실에서의 증명서 요구 관행상 정보보호의 실효성 없다는 인식

4) 현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 노출

목적별 각 증명서가 원치 않는 개인 정보 공개, 필요한 정보의 누락 등... 인권 침해사례 드러남

=> 법률개정의 필요성

2.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개인정보보호 의무 조항 신설

개인의 신분 사항 정보를 국가가 수집·관리하는 데 있어 정보 보호의 원칙

제 5조의 2(개인정보보호의 원칙)

신설조항 1항: 등록사무 처리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원칙 명시

2항: 공공기관 민간기관 사인에 대하여 증명서 제출 요구 시 분명한 목적 제시/

최소 증명서 수집 명시(벌칙 조항에서 위반 시 벌칙 부과 규정 도입)

2) 등록기준지 및 본 삭제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2항의 1, 등록기준지와 2의 내용 중 본 삭제

무의미한 기준지와 본의 삭제, 기준지는 주소지로 대체가능하다고 봄.

3)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최소화

증명서의 교부 청구시,

(1) 가족관계증명서:

양부모를 부모로 표시, 교부 청구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중 증명서에 기록할 사람 지정

(2)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민감한 정보(15조 1항 2호-5호 항목에서의 국적 상실 취득 및 회복, 친권자 지정 및 변경 등, 혼인 및 이혼사항,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성별변경.. : 이는 현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내용)는 교부 청구자가 기록하지 않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일부증명과 전부증명/ 기본증명과 변동증명서의 분리

본인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하지 않도록 함.

가족관계등록부 전부에 대한 열람, 증명서 발급의 금지에 대한 규정 명문화 필요

증명서 발급 당시의 현 상황에 기반한 증명서 원칙.

4) 증명서 교부 신청권자 제한

제 14조 2항의 2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서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5) 과도한 증명서 제출 요구에 대한 규제 도입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 도입, 이행 강제

제117조(벌칙) 1항 신설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목적 범위외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람, 목적 외 용도로 교부받은 증명서를 사용하는 사람

6) 기타

(1) 계부모자녀관계의 가족관계 보호: 민법 상 친양자 요건의 완화

현행 가족법상 친양자 제도의 엄격한 요건을 완화

계부모자녀 사이에 친부모와 같은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생부모와 연락이 단절되어 있는 등 전반적인 가족 환경 등을 참작하여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이상인 경우 및 생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민법 개정 필요

(2) 당사자의 동일성 파악할 수 있도록 외국인 배우자 기재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호(외국인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및 161호(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 지침) 변경: 영문병기,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방향

(3) 증명서 상에 주민등록번호 공시 제한

가족관계등록예규 별지 제11호 서식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 상에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선택하도록 별지 서식 변경

(4) 제3자 증명서 발급시 본인통보제도

3. 신분증명서에 대한 인식, 제도 변화의 필요성

대법원의 법안 홍보 및 피해에 대한 대응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조치 있어야 할 것임.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의 각기 다른 대응과 결과에 따른 실제적 변화 없음.

2008. 4 보건복지가족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대상 가족관계증명서 요구 실태조사 실시

2008. 4 여성부 진행 공공기관 직원 입사 시 제출 요구 증명서 실태조사: 필요이상의 증명서 요구 사실 드러남.

차별의 원인이 되는 정보 공개 요구 관행의 변화 필요성 - 정부, 기업 등의 기관에 개인정보 제출 요구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필요

* 이성애/ 혈연/ 혼인 중심 가족주의 벗어나기
*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 인정
* 가족이 아닌 개인이 중심이 되는 법/ 제도 마련

[별첨자료 1]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8. .

발 의 자 :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을 대신하여 가족관계를 기록□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교부되고 있으나 증명서에 불필요한 정보가 기록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있으므로, 증명서 교부청구 시에 이혼, 파양, 국적상실 등의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외의 배우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되도록 함.

한편, 이 법에서 증명서의 종류를 다섯 가지로 세분화한 본래의 취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또는 사인이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제출 목적을 벗어난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직접 규정하여 과도한 증명서 제출요구를 억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또는 사인이 이 법에 따라 교부되는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명확히 밝히는 등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시 벌칙 조항 도입(안 제5조의2 및 안 제117조 제1호 신설).

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서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함(안 제14조제2항).

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부모로 표시하도록 하고, 교부청구를 하는 사람이 부모, 배우자, 자녀 중에서 증명서에 기록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라.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민감한 정보에 대하여는 교부청구를 하는 사람이 기록하지 아니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본인 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만 공시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부 증명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 대법원 및 그 위임을 받아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나 사생활의 비밀 등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또는 사인이 이 법에 따라 교부되는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족관계 등록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증명서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생략 ②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2. 성명 본 성별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9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등록기준지(삭제) 1. 성명 본(삭제) 성별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등록기준지의 결정) ①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기준지의 결정) 삭제
②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생 략)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5조제1항제5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2.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삭 제>
③~⑤ (생 략)	③~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
1. 가족관계증명서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주민등록번호(이 경우 입양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양부모를 부모로 기재한다)

2. 기본증명서	2. ————
가. (생 략)	가. 본인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이 경우 성명 및 성별에 관한 사항은 증명서 발급당시 사항에 한한다.)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에 관한 사항(이 경우 국적에 관한 사항은 증명서 발급당시 국적에 한한다)
<신 설>	다. 본인의 성명 및 성별 변경, 국적상실 취득 및 회복, 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입양관계증명서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 성별 본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 양부모————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족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부모 배우자 자녀 중 지정한 사람만을 증명서에 기록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③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각 호의 다목을 기록하지 아니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청구를 받은 시 · 읍 면의 장은 그 청구에 따라 증명서를 교부하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인 경우

	에는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없더라도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의 각 다목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각호에 따른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이 변동사항 등을 포함한 전부 증명임을 표시할 수 있다.
<신 설>	⑥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1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6항을 위반한 사람	1.(신설)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목적 범위외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람, 목적 외 용도로 교부받은 증명서를 사용하는 사람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2. 현행 1호
3.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또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3. 현행 2호
4. 이 법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의 권한에 관한 승인절차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알아낸 사람	4. 현행 3호
	5. 현행 4호

[별첨자료 2] 홍정욱 의원 대표발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5

발의연월일 : 2008. 7. 14.

발 의 자 : 홍정욱□김태원□김학송
김희철□우제창□임해규
강창일□신학용□고승덕
박종희□신낙균□권영세
나경원□오제세□심재철
유성엽□이혜훈□정갑윤
김성곤□박대해□안상수
임동규□양정례□김종률
최인기□이용경□배영식
정하균□김동철□김소남
이한성□박상은□조영택
진성호□김충환□강석호
배은희□손범규□김정권
박보환 의원(40인)

제안이유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 중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와 양부모가 나란히 기록됨으로써, 입양관계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입양관계를 밝힐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입양관계가 쉽게 노출되고 있음. 그러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를 부모로 표시하도록 하고 입양관계는 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증명서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가족관계등록부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불필요한 정보노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는 사항 중 “양부모”를 삭제하고, 친양자입양관계가 있는 경우와 같이 입양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양부모”를 “부모”로 표시하도록 하여 입양관계는 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법률 제 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중 “부모□양부모”를 “부모(다만, 입양관계나 친양자입양관계가 있는 경우 부모나 친생부모가 아닌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관계증명서 가. (생 략) 나.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 5. (생 략) ② (생 략)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부모(다만, 입양관계나 친양자입양관계가 있는 경우 부모나 친생부모가 아닌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별첨자료 3] 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7

발의연월일 : 2008. 9. 3.

발 의 자 : 주광덕□권영진□원유철
황영철□권택기□강석호
김성태□이정선□장윤석
안상수□김성회□김선동
김성식□현기환□황진하
김태원□김성수□정미경
정태근□윤석용 의원
(20인)

제안이유

현행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와 양부모가 함께 기록됨으로써 입양사실이 쉽게 드러나 입양가정의 사생활 보호에 미흡하고, 입양의 활성화를 저해하며, 입양사실의 노출을 꺼려 허위의 출생신고를 할 소지가 많으므로, 입양관계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하여 입양가정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친부모 및 양부모는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하여 입양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이혼 등 과거의 기록사항을 전부 현출하는 전부증명 형식과는 별도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일부의 기록사항만을 현출하는 일부증명 형식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입양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록사항 중 “양부모”를 삭제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하고, 입양관계증명서에 “친생부모 및 양부모”를 기록함(안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

나. 각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신설하고, 그 증명사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안 제15조제2항).

법률 제 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나목 중 “양부모”를 “친생부모 양부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부모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 또는 양모가 친생모 또는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 또는 양모와 친생부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 배우자, 자녀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명서의 증명사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
1. 가족관계증명서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 또는 양모가 친생모 또는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 또는 양모와 친생부를 부모로 기록한다)
<신 설>	다. 배우자, 자녀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입양관계증명서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 성별 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 양부모———————————————————————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명서의 증명사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참고자료] 여성부 공공기관 입사시 제출요구 증명서 실태조사 결과

여성부 공공기관 입사시 제출요구 증명서 실태조사결과

□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101개 주요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 조사내용

- 해당기관에서 직원 입사 시 등에 제출을 요구하는 각종 증명서의 종류 실태 파악

○ 조사 증명서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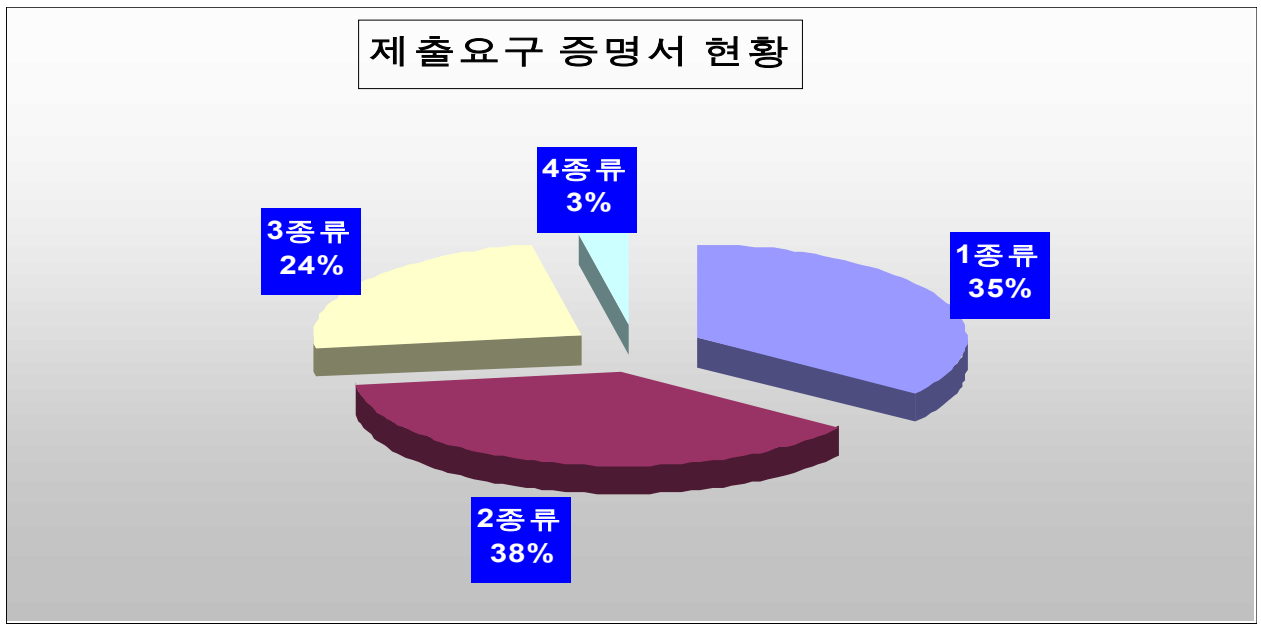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양자/친양자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조사기간 : '08. 4. 8. ~ '08. 4. 16.

□ 분석 및 검토

○ 자료를 제출한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원 입사 시 등에 있어 제출을 요구하는 증명서의 종류 실태조사를 한 결과,

- **2종류 이상**의 증명서를 제출 요구하는 기관이 **65%, 3종류** 이상의 증명서를 제출 요구하는 기관도 **27%**로, 필요 이상으로 **중복되는 내용의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남.



○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 확인 등 **인사업무용이라는 용도로 거의 기본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경향

* 64%가 입사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요구

○ **2종류 이상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 **65개를 대상**으로 그 증명서의 **용도별로 분석**해본 결과, 다른 증명서로 대체 가능한 증명서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었음.

【가족수당, 건강보험 등 부양가족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고 별도로 필요할 경우 개인별로 추가 제출하면 되나,

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이 요구**하고 있으며(38%),

* 가족관계+주민등본 요구(17), 가족관계+주민등본+기본증명서 요구(20), 가족관계+주민등본+호적등본 요구(1)

②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같이** 요구(4%)

③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종류를 함께 요구(5%)**

【신원조사, 신원조회용】

- 신원조사□조회는 **기본증명서로 가능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기관도 있었음(9%)

* 현재 **보안업무시행규칙**에는 신원조사시 기존의 호적등본을 첨부하도록 규정(개정되지 않은 상태)하고 있으나, 국정원(**경찰청**)에서는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한편 '08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기관도 있었음.

- 이미 없어진 호적등본 제출을 요구한다는 기관(9%)

□ 개선방향

○ 공공기관의 입사시 제출요구 증명서 표준으로 '1+1 방안' 제시

- **인사업무용**으로 자체 인사내규에 따라 또는 관행적으로 여러 증명서를 제출 요구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기본증명서' 하나**로 한정하도록 요청

- 가족수당, 건강보험 등 **부양가족 확인을 위한 증명서**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중 하나만** 제출(필요한 경우 해당자만 추가 제출)

○ 공공기관의 자체 인사관련 내규 개정 등 요청

- 자체 인사내규에 채용□입사 시의 구비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규정하고 있는 기관과
- 인사내규의 구비서류로 없어진 기존의 호적등본을 그대로 두고 있는 기관 등에 대하여 '기본증명서' 하나로 규정하도록 요청

○ 보안업무시행규칙의 신원조사 첨부서류 부분 개정 필요

- 현재 기존의 호적등본으로 규정된 것을 개정

○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일반국민이나 기업 등에서 사용 용도별로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지 잘 모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 목적별로 적합한 증명서의 주요 용도별 사례를 작성 홍보
- 미혼모, 이혼 등이 '숨겨야 할 과거'라는 생각을 벗어내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 등

<붙임 1>

□ 제출요구 증명서 현황

구 분	기관수	제출요구 유형	비 고
1종류 증명서 제출요구기관	35개 기관	-가족관계증명서(10) -혼인관계증명서(1) -기본증명서(3) -주민등록등본(21)	
2종류 증명서 제출요구기관	38개 기관	-가족관계+기본(6) -가족관계+주민등본(17) -가족관계+혼인관계(4) -기본+주민등본(4) -호적+주민등본(6) -가족관계+호적(1)	-가족관계와 주민등본/가족과 혼인 동시 제출은 중복 가능성 -호적등본은 폐지
3종류 증명서 제출요구기관	24개 기관	-가족관계+기본+주민등본(20) -가족관계+혼인관계+주민등본(2) -가족관계+주민등본+호적(1) -기본+주민등본+호적(1)	-호적등본은 폐지 -대부분 중복 제출 가능성
4종류 증명서 제출요구기관	3개 기관	-가족+기본+혼인+주민등본(3)	-중복 제출

□ 제출요구 증명서별 현황

증명서 종류	기관수	제출 증명서 용도	비 고
가족관계증명서	64개 기관	-가족수당, 건강보험 등 부양가족 확인 등 -인사업무용, 신원조사용(4)	신원조사에는 불필요
기본증명서	37개 기관	-신원조사용 -본인 신분 확인 등	
혼인관계증명서	10개 기관	-건강보험 등 가입용 배우자 확인	불필요
주민등록등본	75개 기관	-가족수당, 건강보험 등 부양가족 확인 -현업배치를 위한 거주지 확인용(1) -신원조사□신원조회용(5)	신원조사□조회에는 불필요
호적등본	9개 기관	-신원 확인, 신원조사 등	폐지

<붙임 2>

□ 업무별 제출 증명서

업무별	제출해야하는 증명서 종류	사 유	비 고
공무원 채용	기본증명서 * '08.2월 개정	개인 인사기록 유지	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대통령령)
공공기관 직원 채용	호적등본□초본/ 주민등록등본 * 대부분 미개정	입사 구비서류	공공기관 자체 인사내규
신원조사	호적등본 * 아직 미개정	공무원 등 채용 시의 신원조사 첨부서류 *일부 공공기관은 신원조사 없음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신원조회	성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지(주소)	관련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 (행안부예규)
가족수당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양가족 확인 *예외적으로 세대를 같이 하지않는 경우의 가족 확인 필요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부양자격 요건 확인 *동거하지 않는 부양가족 확인 필요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연금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가족관계, 혼인관계 등)	노령연금 청구 분할연금 청구 장애연금 청구 유족연금 청구 등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족보상연금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메모란

메모란

발행일 : 2008년 10월 1일
발행처 : 가족관계등록법대응연대모임

한국여성의전화연합	02-2269-2962
한국여성민우회	02-737-5763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한국여성단체연합	02-313-1632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02-3675-7740
국회의원 이정희	02-788-2101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regislaw
이메일 : regis_on_fam@hanmail.com

가족관계등록법 법률 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단을 모집**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침해를 경험하신 분들은
연대모임 카페 및 이메일, 팩스로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1. 각 증명서에 원치않는 정보가 공개된 경우
2. 각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가 누락된 경우
3. 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과도하게 각 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4. 기타 가족관계등록법의 각 증명서로 인한 피해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힘을 모아주세요!